E·LAND TOWNHILLS

# 김포한강신도시 Ab-12블록 이랜드 타운힐스 입주자 모집공고

문의 1800-0910

- 당 아파트는 9.1부동산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.(개정 시행일 : 2015.02.27)
- 이 주택은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.10.29 입니다.(청약접수는 2015.10.29 입니다.) 이 주택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,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 주택입니다.
- 당 아파트는 2007.09.0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"무주택기간, 청약저축, 청약통장 가입기간"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"청약 가점제"가 적용됩니다.
- 당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15.05.22.기준) 적용되었으, 이에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-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: 기존 "무주택세대주"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→ 세대주가 아닌 "무주택세대구성원"도 경우에도 신청 가능(세대원에 1명만 청약신청 가능)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
  - 청약 순위에 가산제 및 청약통장 순위명칭 요건 완화 : 기존 1, 2, 3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/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 기존 "2년 24회 납입 → 1년 납입회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되면 발생
  - 무주택자 예치기액 변경기간 등 완화 방법 :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/ 주택규모별 기간단축 및 주택규모 상향 시 3개월 청약제한 기간 폐지
  -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기간 감점제도 폐지 :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
  - 소형 청약주택 기준 완화 : 기존 "전용면적 102㎡ 이하 →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
  - ※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.02.27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김포시은 「주택법」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바투기과열지구이다.
- 해당 지구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기준 청약 1순위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거주자가 우선됩니다.
  -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지역이 시장 기준 ① 지역에 30%를 우선공급하며, 20%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(경기도에 2015.04.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나머지 50%를 수도권시설특별시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이만 거주자 거주지역에 공급됩니다.
  - 시흥시 시흥시 대야동 일대 일부 지역 기능지구 해제 및 주택재지구 편입에 의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결혼 주택소유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(경기도에 2015.04.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나머지 50%를 수도권시설특별시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이만 거주자 거주지역에 공급됩니다.
  - 시흥시 시흥시 대야동 일대 일부 지역 기능지구 해제 및 주택재지구 편입에 의한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결혼 주택소유 없이 계속 거주한 경우 (경기도에 2015.04.2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나머지 50%를 수도권시설특별시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이만 거주자 거주지역에 공급됩니다.
  - 4) 1년전 33개지역 때문 주택가인 처음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(1)주택공급 방법 및 적용기준 : 당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 기준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(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.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제1항에 의거 1호 또는 1세대당 소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%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공급 신청하는 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청약 불가능 하오니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(2)부양가족의 인정기준 : 1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불가능 하오니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2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모집 기준일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